

제기

甲

미완결

행정주의

수집
년월일
4290
12
21

8

발행부서

공발

호번개판

5

시장

Handwritten signature

부사

90.12.31

사무국장

국장

총무과

과장

문서과

기안자

건영공문서 처리에 관한 건

품의

거기 2월 4일
문서 처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여외안과 처리
사행하고서
재결을 당청하나다

건
부
명

부
시
장

각
구
청
장

각
국
과
장
전

신
시
기

공
문
서
의
처
리
절
차
를
엄
격
히
준
수
하
고
사
무

처
리
에
있
어
서
종
횡
의
관
련
은
진
밀
히
함
은

시
행
성
운
영
에
지
대
한
영
향
이
유
한
바
지
난

一
년
간
의
문
서
처
리
상
황
을
보
진
대
당
시
처
무
규
정
에
위
반
됨
이
허
다
할
뿐
아
니
라
각
과

간의 왕복 문서는 문논 통달 문서의 주지찰저
를 기치 못하고 문서 환의 등의 무용한 시간을

허비하고 각자 책임 완수를 소^소루히 하는 례가
불소 하오니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절 때

없이 의하여 좌기 각항을 실시 요서 하오니
귀부하 직원에게 각별 통^통려 하시기 의명
준^준수

통^통찰^찰하^하하^하하^하

기

「품의안」가 ~~장~~에 바하여

1. 기안에는 문구, 큰 간략히 기재하고 「과기

요령」을 부기 하 ~~해~~ 는 기안행은 필로로 할 때 무 (簡略) ~~성~~ 은 ~~조~~ 는 ~~기~~ 는 ~~재~~ 는 ~~할~~ 것

2. 성안으로서 특히 ~~성~~ 은 ~~행~~ 은 ~~문~~ 은 ~~이~~ 는 ~~하~~ 는 ~~것~~ 은 ~~간~~ 은 ~~단~~ 은

(법규, 예규 등의 말해(核對))

히 ~~재~~ ~~가~~ ~~를~~ ~~말~~ ~~하~~ ~~여~~ ~~주~~ ~~서~~ ~~할~~ ~~것~~

3. 목잡한 내용의 ~~문~~ ~~은~~ ~~주~~ ~~문~~ ~~회~~ ~~에~~

「과기」별기 「또는」 단서 「큰」분이 ~~부~~ ~~가~~

관호를 쓰든가 하여 「가」의 「지」알기

208

1. 구청 및 시읍수 등에 정기적으로 생활할 시
 이 는 ^(부동산부서) ~~가~~ 의 ^(문) ~~문~~ 등 시 ^(문) ~~문~~ 해 시 ^(문) ~~문~~ 간의

실약을 도모할 것

2. 수시보조의 관으로 부처 신청 또는 품신에

이하 영영관할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령서를 인체하여 사용할 것

3. 전도금 제도를 폐지 하고 (地方自治法施行令
 第六十一條의 認定된事項은 例外로 함)

영감 제 은실시할 것이며 분임출납공무원
을 임명할 것

4. 정기정휴인기발예산영감에
별예산이 책정된 후 예산
수관 국장이

기초(期初)의 정(正)재(在)인(人)의

책정된 예산범위에서 각종영감하도록
할 것

3. 함의문서결재에 관하여
현재(在)의 함의문서에는
사무 담당 임자

21

3. 합계
 4. 합계
 5. 합계
 6. 합계
 7. 합계
 8. 합계
 9. 합계
 10. 합계

인(印)을 받는다(受接) 하므로
 부속(附屬)의
 서류의 결재는 원칙적으로 과장이상

단 총무과 감사 회계과 경리 사계과 추산

등은 예외로 함
 2. 현재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의문서

4. 처의 부서는 이른바
 처의 부서는 이른바
 처의 부서는 이른바
 처의 부서는 이른바

일반서류 및 함의서류의 결재시 예외의 장
이상은 반드시 일자가 일한 고무인장을 사용할

것

5. 제반 공문서의 결수 및 배부는 물론은 결재

1. 각 과 문신 함 압 자는 후 시 한 번 후 시 기 재 후 즉 과 과 장 의 기 제 시 하 유
처 리 의 관 한 지 시 를 받 은 것 2. 배 부 받 을 양 조 의 기 제 시 하 유

2. 서류의 신속 처리와 기밀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류배부 및 결재루트 큰 변지외

같은 정 하였으나 이후에는 본루트 예외
하여 처리 할 것

213

二 案

부 시장

재무국장 전

표무인 조각^{해부}에 관한 건

수제거에 관하여 거트월 4일 문서취급
위원회 의결의에 ~~의~~하여 제반 서류결재

시에 ~~부~~과장이 상은 ^{등이}반 ~~부~~개 일자 기안한 고무

인 은 사용케 되었으나 귀국에서 ~~한~~

구암하서백부하시기무망함.

例

指令第 號

區

名

事業所名

檀紀四二九 年 月 日 字 第 何 號 呈 申 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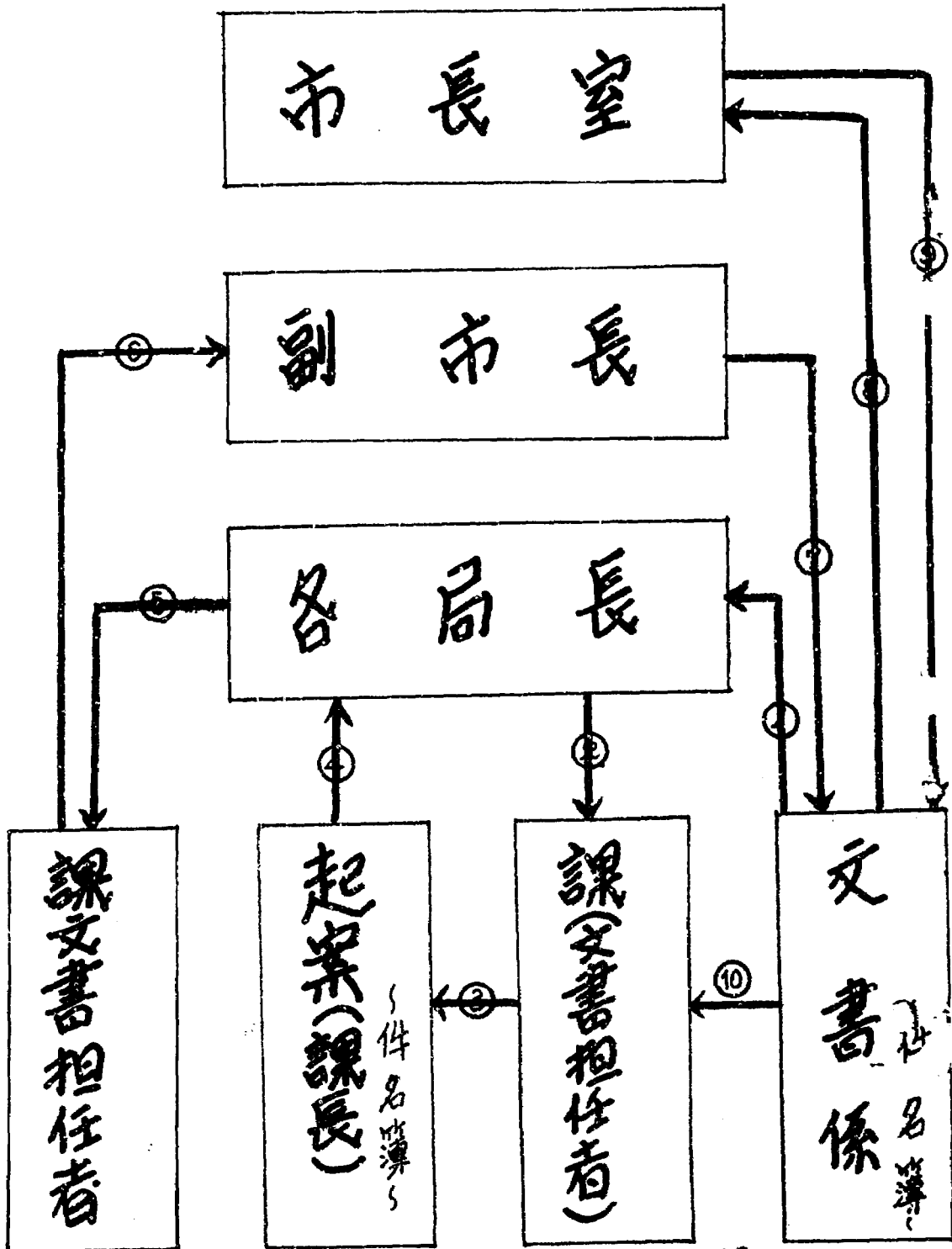
(稟申) 附件 認可 卅五 一 金 園 整 之

令 達 註

檀紀四二九 年 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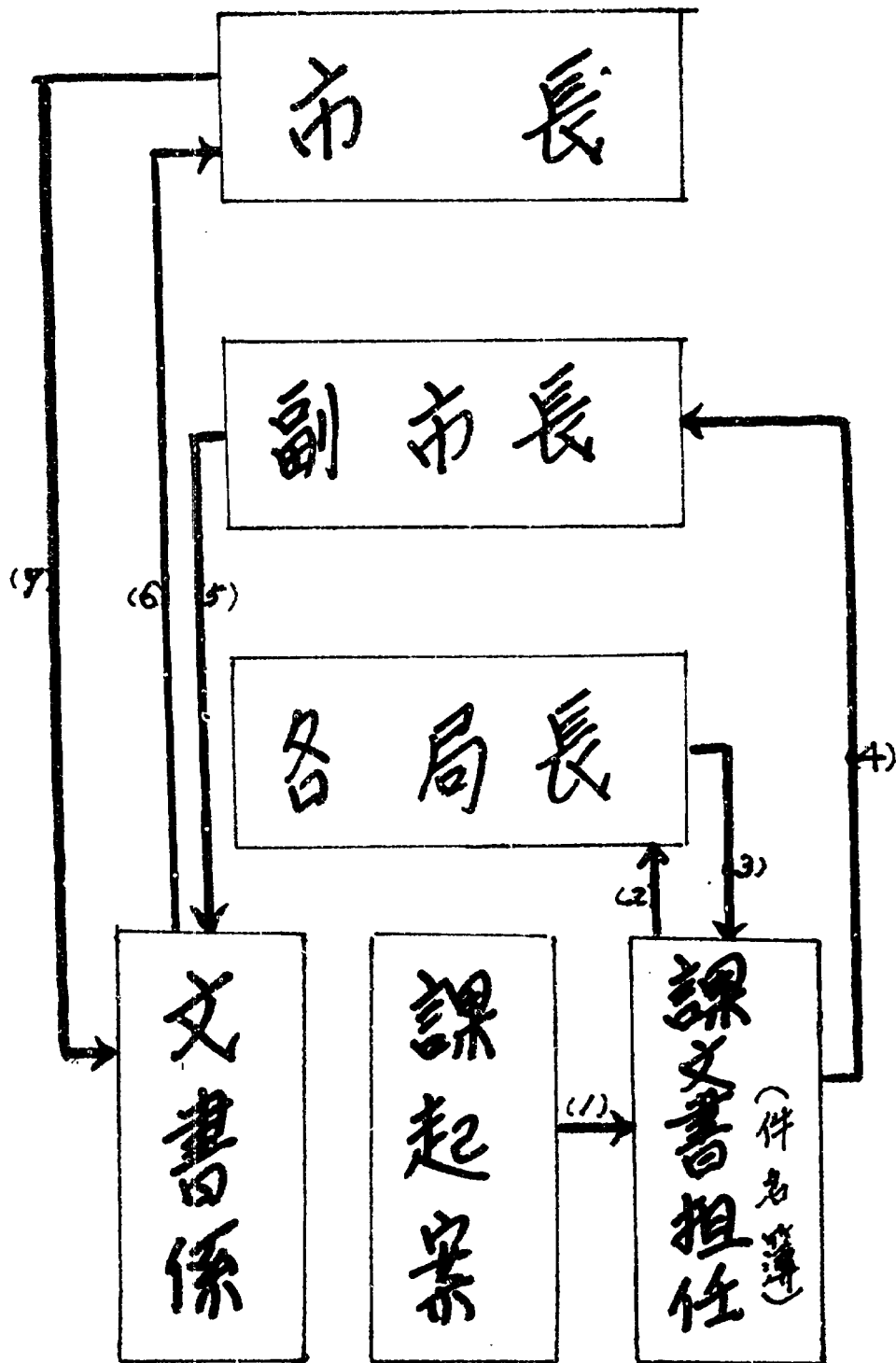
市長 許 政

一般書類決裁系統之覽表 (一般接受)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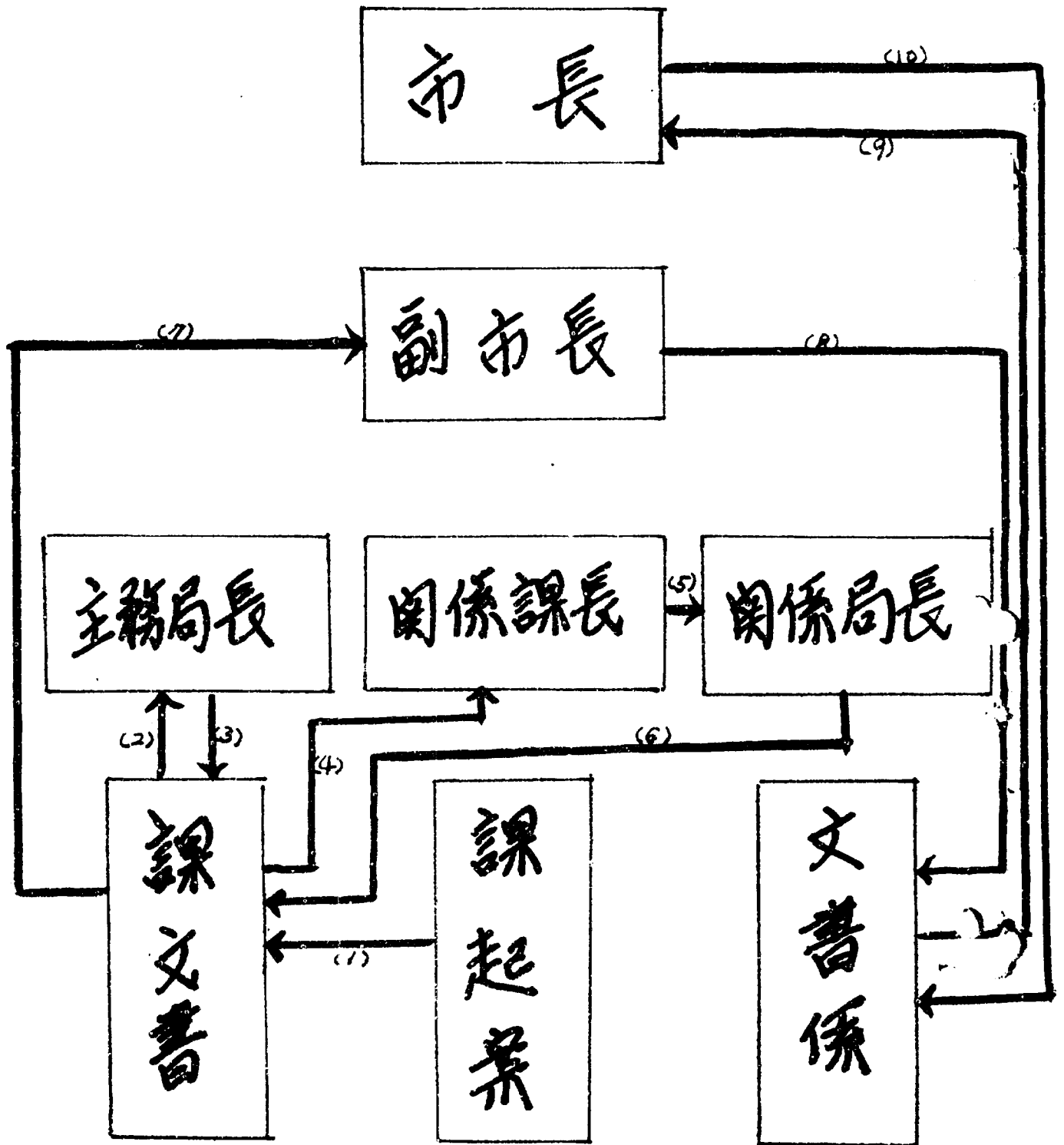
一般書類決裁系統一覽表(課立案) 2



223

218

會議書類決裁系統一覽表 (課立案)



事前供覽書類(重要書類)決裁手-三

